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8월
발 의 자 : 정영길 의원외 7인

1. 제정이유

○ 최근의 국제결혼 증가로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근거 규정(안 제4조)
나.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6조)
다.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나. 예산관련사항 : 관련 있음
다. 기 타
1) 제정조례안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족을 말한다.
2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다문화가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
2. 결혼이민자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
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계획 수립) ①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
3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
5.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
6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원사업)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군내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
2.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
3.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
4.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
5.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
6.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
7.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
8.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
9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예산지원) ①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